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관세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OECD Update

최신 뉴스기사: [디지털세가 온다] ① 조세 회피 막는다...국제 공조 시작 (아주경제, 2020.09.18)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7151401546>

-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다. 디지털세는 고정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직접 매출을 얻는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로 부과하는 조세다.
- 기존 법체계에서 법인세는 고정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디지털 기업의 경우 제조업처럼 고정 사업장이 필수가 아니다. 따라서 디지털기업은 실제로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만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로 인한 조세 회피가 발생하는 셈이다.
- 전은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주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부가가치가 규모에 체증적으로 발생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필연적으로 세계적 규모의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기 쉽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정 KPMG

이전가격 & 관세본부

28 September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송묵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 현재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 개국(G20),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뿐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도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 OECD는 '수익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정책을 논의해왔다. 지난해에는 통합접근법을 통해 시장 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OECD는 올해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종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 프랑스는 지난해 3월부터 '글로벌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 프랑스 내 매출액 2500만 유로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에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했다.
- 전 조사관은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다 보니 미국이 와인·명품백 같은 프랑스 제품 일부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에 프랑스는 한발 물러서 올해 디지털서비스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상황이 이러자 미국은 지난 6월 OECD 디지털세 협상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디지털세에 대한 국가 간 이해관계로 인해 올해 내로 타결이 어려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 국제조세/관세 Update

인도 정부 'FTA에 따른 특혜 수입 관세율 적용의 축소'를 초래하는 방안 공표

최근 인도 정부는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세수 부족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하여 'FTA에 따른 특혜 수입 관세율 적용의 축소'를 초래하는 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FTA 특혜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TA 체결 국가로부터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당국은 동 수입물품에 대해 FTA에 따른 특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 1) 수출자는 동 FTA 상의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정하여
-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원산지를 증빙하는 하고
- 3) 수입자는 동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수입국에서 동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 관세율 적용을 신청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그러나, 인도 정부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 사항들을 당국의 관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하고 '20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만약 동 사항들이 미 이행되는 경우 특혜 관세율 적용을 배제할 예정입니다.

- 1) 수입자의 원산지 판정자료 구비 의무
- 2) 인도 관세당국 요청 시 수입자의 즉각적 제출(10일 이내) 의무
- 3) 원산지 관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 의무

비록 위 사항들이 수입자의 추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실무적 차원에서 볼 때 원산지판정은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수행하게 되므로 모든 자료는 수출자로부터 준비되어야 하므로 수입자 뿐만 아니라 수출자의 사전대응 또한 요구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KPMG 이전가격&관세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면 상품 설명서 및 보다 자세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수출입자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 2)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자료 점검 및 정형화
- 3) 수입자의 대응 프로세스 정립

국제조세 최신 판례 : 서면-2020-법인-1544 [법인세과-1600], 2020.05.08

- 질의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서 그룹사로부터 상표권(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수수료를 그룹공동광고 등*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19년 A법인 및 B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쟁점회사들은 기존 그룹사와 달리 사명, 상품, 서비스명에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명함, 배지, 홈페이지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 (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정사업장 간주 무리한 과세...인도 국세청 얘기 (일간 NTN, 2020.09.08)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349>

- 인도 대법원, 삼성중공업 참여 컨소시엄 연락사무소 손 들어줘, 현지 플랜트 증설 위한 컨소시엄내 소통 위해 직원 2명 상주
- 인도 국세청이 현지 단순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한국기업을 고정사업장으로 봐 법인세를 과세했다가 현지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패소, 고정사업장을 둘러싼 무리한 과세의 전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 인도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턴키(turn key)방식이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인도 대법원은 해당 법인이 프로젝트 자체의 수행 관리가 아닌 관련 문서수발 정도를 수행한 것으로 봐 고정사업장은 아니라고 판결(Supreme Court of India, Civil Appeal No. 12183 of 2016)했다.

3.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INSIGHT: Implementing the Transaction Net Margin Method for Transfer Pricing in Brazil

September 4, 2020

브라질: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 Net Margin Method, 이하 "TNMM") 도입에 대한 시사점

2018년 2월, 브라질 과세당국(Receita Federal do Brasil, 이하, "RFB")과 OECD는 각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전가격 세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평가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RFB와 OECD는 브라질 정부가 OECD에 가입하는데 앞서 자국의 이전가격 세제를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現 브라질의 이전가격 세제는 1996년 발효된 Law 9430/1996 (이후 Law 12.715/2012 개정안을 통해 정상가격 개념 도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화거래에 적용되는 정상가격의 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입법되었습니다. 1996년 당시, 브라질 경제 내에선 무형자산 거래, 사업구조 개편, 디지털 경제 등의 중요성이 크진 않았으나, 지난 25년 동안 진행된 기술적 진보에 따라 오늘날 브라질 경제에서 무형자산 거래는 그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브라질의 세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이전가격 규정이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부합하기 위해서 RFB는 현 이전가격 세제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대체할지 혹은 기존 체제로 유지할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TNMM의 적용

TNMM은 현재 전세계의 과세당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이 체결한 APA 중 80%가 TNMM을 적용하였으며, 미국 국세청이 자국 납세자와 체결한 유·무형자산 거래 관련 APA의 86%가 TNMM에 해당하는 CPM (Comparable profits method)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소재한 15개 국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TNMM은 분석대상법인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기업들의 이익률을 평가하여 해당 특수관계거래에 적용된 가격이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TNMM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에 대한 영업이익단까지의 손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분석대상법인과 유사성, 수행기능, 사용자, 부담위험 측면에서의 유사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비교가능회사의 재무자료에 대한 차이 조정을 통해 분석대상법인과 유사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확보 가능성 및 국가 위험 차이조정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TNMM의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납세자와 비교가능한 현지 독립회사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비교가능회사의 주요 자료 출처는 공시 재무자료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잠재적으로 비교가능한 상장회사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Bureau van Dijk's (BvD's) TP Catalyst 데이터베이스 상 존재하는 브라질 소재 상장회사는 358개에 불과하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역시 각각 130개, 97개에 그칩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현지 자료제출의 미비로 인해 지역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신뢰가능한 데이터가 매우 드뭅니다. 또한 자동차, 제약 등 많은 산업군 내 현지법인들은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속으로 활동함에 따라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어 비교가능회사로 사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가용성(availability)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는, RFB가 주변 라틴 아메리카 과세당국들처럼 지역 내 혹은 전세계에 소재한 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한 벤치마킹 결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기준, 이전가격 규정이 있는 18개 중남미 국가 중 17개 국가의 과세당국은 자국 외 지역에 소재한 비교가능회사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교가능회사들에 대한 국가위험 차이조정 필요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위험에 대한 차이조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브라질 이전가격 실무자들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FB 가 고려할 수 있는 국가위험 차이조정 방법으로는 TNMM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 이익률에 국가위험 프리미엄(혹은 디스카운트)를 가감하는 안이 있습니다. 국가위험은 특정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으로 사업활동의 성격과는 무관하며, 정치적 불안정성, 인플레이션, 국가채무 상태, 환율변동성, 정부규제 등의 차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브라질 현지 비교가능회사들에 대한 재무자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납세자는 해외 비교가능회사들의 이익률지표(Profit level indicator)에 국가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TNMM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본조정(capital adjustment)을 통해 분석대상법인과 비교가능회사 소재 국가의 현지 이자율 간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비교가능 조정

TNMM 적용 시 분석대상 특수관계거래와 잠재적 비교가능거래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비교가능성 조정을 통해 이전가격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교가능성 조정방법으로는 회계처리 방식 조정, 운전자본 조정 및 상기 언급된 국가위험 조정이 있습니다.

회계처리 방식 조정은 주로 무형자산 상각방법과 재고자산 인식(예: 선입선출 vs. 후입선출)기준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운전자본 조정은 재고자산 보유수준 및 매출채권·매입채무 차이에 따른 기회비용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다년도 분석, 사분위범위의 사용, 가중평균 PII 사용 등을 통해 분석대상법인과 비교가능회사의 이익률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합리적인 비교가능회사의 선정은 브라질 세무당국이 당면한 주요 과제입니다. 현재 브라질 내 가용한 공시자료를 통하여 현지 소재한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할 경우, 브라질 납세자와의 기능적 유사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브라질 외 지역에 소재한 비교가능회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위험을 고려한 추가적인 차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FB는 비교가능회사에 대한 정보의 확보가능성과 합리적인 국가위험 차이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가격을 가장 적절히 반영함과

동시에 브라질 이전가격 실무자들이 효율적으로 비교가능회사를 검색 및 검토할 수 있는 비교가능회사 집단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INSIGHT: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Covid-19 for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EU

September 1, 2020

COVID-19가 아시아 및 유럽 이전가격 세제에 미치는 영향

다수의 전문가들은 COVID-19가 금융 및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2008-2009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불황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개요 – 제한적인 위험 부담 모델(Limited Risk Model)

일반적으로 과세당국들은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판매)법인에 대하여 주기적인 경제분석 업데이트에 근거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익 수준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법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과세당국이 이슈를 제기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전가격 정책 조정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다국적기업은 COVID-19로 인해 발생한 이전가격 관련 이슈에 대응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전가격 정책을 업데이트 할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Covid-19의 영향을 반영하여 이전가격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동영향이 반영된 현시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과거시점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므로 Covid-19 영향이 반영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가지 접근방법

2008-2009년도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에 대한 비교가능회사의 수익성 동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은 2가지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방식 1: 선정된 비교가능회사 과거 재무자료(Manual Financial “Back-date” of Selected Comparables)**

이전가격 문서화 목적으로 선정된 아시아 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에 소재하는 비교가능회사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의 경우 2004-2018년,

유럽의 경우 2007-2016 년의 재무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년도 데이터를 통해 경제주기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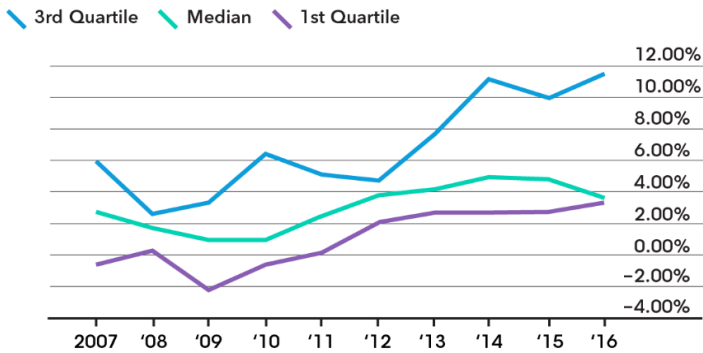
(기사 원문은 아시아태평양 분석자료를 포함하나 본 뉴스레터는 유럽 분석자료만을 포함하였습니다.)

유럽제조업체 - 자동차부품 산업

2009 년 발생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유럽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낮은 이익을 실현하였으며, 동 업체들이 2009-2010 년 실현한 총원가가산율의 하위 사분위 값은 마이너스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불황이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다만, 상위 사분위 값의 경우 2009 년 대비 2010 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1 년과 2012 년 값보다도 높은 값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잠재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Figure 5: European Manufacturers—Automotive Components

IQR for Manufacturing of Automotive Components (FCM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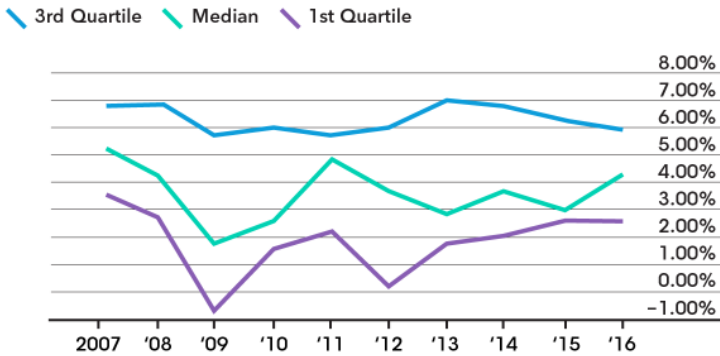
Bloomberg Tax & Accounting

유럽판매업체 -전자부품

유럽 전자부품 판매 산업은 자동차 부품산업과 유사하게 2009 년 총원가가산율 하위 사분위 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중위값의 경우 경기불황 전 하위 사분위값 보다도 낮은 값을 기록하였습니다. 2012 년 또다시 발생한 하위 사분위 값의 감소는 유럽 채무위기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Figure 6: European Distributors–Electrical Components

IQR for Distribution of Electronic Components (OM)



Bloomberg Tax & Accounting

● **접근방식 2: 시뮬레이션 접근방법(Simulation Approach)**

시뮬레이션 접근방법의 경우, 대규모의 회사 모집단 데이터에서 2,000 개의 회사를 무작위로 뽑아 경기불황 시기인 2008-2010 년과 경기 안정세 시기인 2014-2016 년 기간 동안의 이익수준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가중평균을 통한 다년간 분석은 제품의 생명주기 혹은 사업 주기로 인해 발생된 변동성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Amadeus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유럽지역 분석 결과

유럽지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Bureau van Dijk's (BvD's)의 Amadeus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2,000 개의 회사를 추출하였습니다. 추출된 데이터 모집단은 Bvd 독립성 지표가 A+ 에서 B- 까지인 50,550 개의 회사들로 구성됩니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경기불황이 수익성 지표에 미친 영향이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제조 및 판매업의 경우 경기불황이 하위 사분위값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매업체의 경우 경기불황 기간인 2008-2010 년의 상위 사분위 값이 그 외 경기안정세 기간의 상위 사분위 값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사업환경에 있어서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Figure 9: Simulation results Europe

Amadeus–Simulation exercise

Statistics	Distribution (Operating Margin)		Manufacturing (Net Cost Plus)		Services (Net Cost Plus)	
	2014-2016	2008-2010	2014-2016	2008-2010	2014-2016	2008-2010
1st Quartile	2.26%	1.56%	2.06%	0.71%	2.30%	1.18%
Median	4.30%	3.11%	3.52%	1.72%	5.20%	4.12%
3rd Quartile	6.27%	8.29%	6.33%	4.35%	11.29%	10.25%

Bloomberg Tax & Accounting

시사점

수익감소 혹은 손실발생으로 인한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 변경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슈를 제기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은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법인이 통상적인 이익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과세당국은 Covid-19가 다국적기업의 운영과 이익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수행할 이전가격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과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는 이전가격 정책을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입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시적으로 하향조정을 수행하되, 이후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 시 이에 기반하여 재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